문화산업단지

문화산업단지란 기업, 대학, 연구소, 개인 등이 공동으로 문화산업과 관련한 연구개발, 기술훈련, 정보교류, 공동제작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 토지 · 건물 · 시설의 집합체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지정 · 개발된 산업단지를 말한다.

용어설명

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위해 1999년에 문화산업진흥법령이 제정 되었는데, 이법에 의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 관련기술의 연구 및 문화상품 개발 · 제작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하여 문화산업을 효율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.

문화산업단지의 조성은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산업단지,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· 개발절차에 의한다.

문화산업단지내 사업시행자는 법에서 규정된 각종 부담금이 면제될 뿐만 아니라 문화산업단지내 문화산업진흥시설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.

※ 문화산업 : 문화상품의 기획 · 개발 · 제작 · 생산 · 유통 · 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행하는 산업

※ 문화상품 : 예술성 · 창의성 · 오락성 · 여가성 · 대중성이 체화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 · 무형의 재화(문화콘텐츠, 디지털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를 포함한다)와 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를 말한다.

※ 산업단지 : 공장、지식산업관련시설、문화산업관련시설、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、 재활용산업관련시설、자원비축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、연구、업무、지원、정보처리、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제고를 위하여 주거、문화、환경、공원녹지、의료、관광、체육、복지 시설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、개발되는 일단의 토지

관련법규

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동법시행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

관련용어

산업단지 교통유발부담금

참고

- 알기쉬운 도시계획 용어집 -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

From:
https://www.conschool.co.kr/ - **DB World**

Permanent link:
https://www.conschool.co.kr/%EA%B1%B4%EC%84%A4%EC%9A%A9%EC%96%B4/%EB%AC%B8%ED%99%94%EC%82%B0%EC%97%85%EB%8B%A8%EC%A7%80

Last update: **2016/04/07 03:58**